다함께, 더 좋은 유성

대전광역시 유성구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대전광역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22차) 개정 일부변경 알림

1. 구정 발전을 위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市 주택정책과-2925호(2026. 11. 2.) 관련 됩니다.

2. 대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제22차 개정) 개정과 관련하여 일부 변경 내용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는 개정(일부변경)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바탕으로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3. 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관리규약이 제정·개정되거나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 ·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는 바, **개정 후 30일 이내에 우리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자료는 유성구 공동주택과 홈페이지 공지사항(344번)에서 다운 받아 활용가능.**

붙임 1.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주요내용 1부.
2.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22차 개정) 1부. 끝.

대전광역시유성구청장

수신자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귀하, 관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귀하

주무관	**이현주**	공동주택지원 팀장	**강기호**	공동주택과장	전결 2026. 11. 2. **김학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4057 (2026. 11. 2.) 접수

우 34139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11, (어은동, 유성구청) / www.yuseong.go.kr

전화번호 042-611-2543 팩스번호 042-611-2768 / hyunju7502@korea.kr / 대국민 공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반드시 파기하세요